

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

NAJU-SI WEB CONTENTS



2019년 11월 14일 14시 02분

NA  JU 나주시

Table of Contents

Table of Contents	2
처리절차	3
청구 및 접수	3
공개원칙	3
공개방법	3
공개종류	4
공개시 확인 사항	4



청구 및 접수

공개원칙

- ▣ 해당정보를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
- ▣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

공개방법

- ▣ 문서, 대장, 도면, 카드류 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▣ 녹음·녹화 테이프, 슬라이드 : 복제물의 교부

- 마이크로필름 : 열람 또는 사본

■ 공개종류

- 사본공개
 -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
 -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능
- 부분 공개
 -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 공개 가능
- 즉시 공개
 - 공개여부 결정 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

■ 공개시 확인 사항

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
-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(주민등록증 등)
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
 -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
 - 정보공개 위임장
 -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
※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(공개, 부분 공개, 비공개)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 지참

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

NAJU-SI WEB CONTENTS

